

제조물 책임의 이해

- 불법 행위 책임 -

글·강창경 법학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불법 행위의 의의

불법 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우리나라의 법원은 결함 제품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에 바로 이러한 불법 행위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불법 행위의 요건

이러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②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을 것
- ③ 행위가 위법일 것
- ④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것
- ⑤ 손해 발생과 위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1)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과실 책임주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과실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행하는 것인 고의

와 구별된다. 이러한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중과실은 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하고, 경과실은 다소라도 부주의를 덜한 것을 말한다.

과실 책임주의는 자기의 과실(고의 포함)에 대하여만 가해 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주의 아래에서는 자기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과실 책임주의는 근대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개인의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책임의식을 높여서 이로써 산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면 각자의 활동이 위축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한 경제나 사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실 책임은 가해자의 행동의 자유만을 확보할 뿐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구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고도 정밀 산업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의 결함을 책임 요건으로 하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문제삼지 않은 제조물 책임도 이 과실 책임주의를 수정한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이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제조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가해자인 제조자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제조자가 책임을 지도록 판결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2) 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조자는 제품의 결함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조자가 결함 제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3) 행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가해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제조자가 결함 제품을 제조하고 이 결함 제품을 사용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결함 제품을 제조한 것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4)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위법한 행위가 반드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여 한다. 손해가 없으면 불법 행위 책임은 없다. 여기서의 손해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며 일체의 이익 상실을 의미한다. 또 손해에는 물건 훼손 등의 적극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이익의 상실 등 소극적인 손해도 포함한다.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

결함 제품을 사용한 자가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면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

재하여야 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독극물이 들어 있는 식품을 먹고 신경 장애를 입은 경우, 그 신경 장애가 독극물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의 판단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당 인과관계는 어떤 사실과 결과와의 사이에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음에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개연성을 주장하면 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것으로 인과관계는 인정되어" 가해자가 책임을 진다고 판결하고 있다.

공동 불법 행위

수인(數人)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연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 행위자로 보게 된다. 공동 불법 행위에서는 이와 같이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연대 책임을 부담시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연대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실수와 자동차의 결함이 서로 합쳐져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피해자인 자동차의 동승자 또는 보행자가 그 운전자와 제조자 쌍방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운전자와 제조자는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각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전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

가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는 자유이다.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청구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연대 책임은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한편 먼저 배상을 하게 된 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 내부적인 책임 비율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만일 연대 채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먼저 배상한 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과실 상계

제조물 책임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배상 금액을 산정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기업이 배생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과실 상계라 함은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증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과실을 침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상계라고는 하나 고유 의미의 상계는 아니며, 오로지 자기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전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 입각한 제도이다.

특히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은 그로써 손해 배상액을 침작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때에는 그 과실을 침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예를 든 경우, 제품의 설명서를 읽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중과실, 경과실을 판단하기 어

렵다. 제품 설명서의 형식·내용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고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이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또한 그 내용에 관하여도 자세한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품 설명서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알기 쉽게 작성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문제삼아 과실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기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고, 또한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역시 소멸한다. 3년은 소멸 시효 기간이고, 10년은 제척 기간이다.

3년의 단기 시효를 정한 이유는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감정도 가라앉게 되고, 고통도 잊게 될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금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또 시간이 지나면 불법 행위의 증명이나 손해 배상금의 산정도 곤란해진다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 분쟁에서 법원이 이러한 불법 행위 법리를 적용시키고 있으므로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 기간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불리하므로,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10년 제척기간을 두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특칙을 두고 있다.